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7. 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6. 25.
- 나. 제출자 : 서산시장
- 다. 회부일자 : 2003. 6. 26.
- 라. 심사기간 : 2003. 7. 5.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도시과장 이인수)

가. 제정이유

-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개발방식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2002. 12. 30 개정(법률 제6853호)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지역은 개발구역 면적 10만제곱미터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청취의견이 타당하면 이를 반영하고 주민의견에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로 규정하고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이상 범위안에 정함(안 제9조).
-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및 용자 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도시개발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의견 대상구역은 면적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투명성을 규정하였고, 주민 청취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도시개발의 균형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며
- 과소토지 기준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개발조례표준안(2000. 8. 29)을 작성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에 알맞게 제정하여 2003. 4. 19 서산시 공고 제181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는 조례안이며,
- 상위법령 범위안에서 제정되는 도시개발조례로서 시행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하고 현실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균형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61 호
의결(보고)	2003. 7. .
년 월 일	(제 회)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 6 . 25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2003. 06. 25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정이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방식인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되고, 현행 주택·공업단지 조성 등 특별법 위주의 단편적인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도시개발방식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2000.1.28일자로 제정(법률 제6242호)되고 2002.12.30일자로 개정(법률 제6853호)되어 2003.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청회 개최지역은 개발구역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선정하고,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

나. 과소토지의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5조).

3. 참고사항(붙임)

가. 입법예고 결과보고

- 의견 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83조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 제10조, 제18조, 제23조, 제52조 제71조,
-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8조
- 지방세법 제238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 건축법시행령 제80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65조

다. 도시개발조례 표준안 1부. “끝”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람 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 ①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공청회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범위로 하여 정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 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용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용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용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5.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③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이하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기획감

사담당관, 도시과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 3인이내의 서산시의회 의원, 3인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특별회계 운용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용자배분
2. 제14조제2항의 용도의 사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용자기간은 10년 후 일시상환 하되,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 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용자는 시와 용자대상기관(이하“용자기관”이라 한다)장이 체결한 용자약정에 의한다.

④용자기관은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도 시 개 발 법

관 련 법 령 발 체

□ 都市開發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都市開發區域"이라 함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3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2. "都市開發事業"이라 함은 都市開發區域안에서住居·商業·産業·流通·情報通信·生態·文化·保健 및 福祉 등의 機能을 가지는團地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第3條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計劃的인 都市開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都市開發區域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都市開發事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이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市·道"라 한다)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が 協議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者를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國家가 都市開發事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大統領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都市開發區域의 규모, 요청의 節次, 提出書類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開發計劃의 내용) ①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都市開發區域의 지정후에 이를 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1. 都市開發區域의 명칭·位置와 면적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目的 및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間
3. 都市開發區域을 2 이상의 事業施行地區로 分割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그 地區分割에 관한 사항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관한 사항
5.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6. 人口受容計劃
7. 土地利用計劃
8. 交通處理計劃
9. 環境保全計劃
10. 保健醫療 및 福祉施設의 設置計劃
11. 道路, 上·下水道 등 주요 기반시설의 設置計劃
12. 財源調達計劃
13.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 기반시설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負擔計劃
14. 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土地·建築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 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1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廣域都市計劃 또는 都市基本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地域에 대하여 開發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發計劃의 내용이 당해 廣域都市計劃 또는 都市基本計劃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지정목적·시행방식 및 인구수

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都市開發區域에 관한 開發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區域안에서 住居·生産·教育·流通·慰樂 등의 機能이 상호 調和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開發計劃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한다.

第7條 (住民 등의 意見聽取)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都市開發區域을 지정(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第9條 (都市開發區域指定의 告示 등) ①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당해 都市開發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關係書類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關係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에게 공람 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③市·道知事가 都市開發區域을 지정·告示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⑤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

⑥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第11條 (施行者 등) ①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各號의 者중에서 指定權者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전부를 換地方式으로 施行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을 施行者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首都圈整備計画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에서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중 過密抑制圈域안의 사업기간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6.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土木工事業 또는 土木建築工事業의 免許를 받는 등 開發計劃에 적합하게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신설 2002.12.30>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③指定權者는 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土地所有者가 공동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이 동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者와 공동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規約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者가 都市開發事業을 換地方式에 의하여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行規程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30>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⑧指定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施行者를 변경할 수 있다.

1.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후 2年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行政處分에 의하여 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가 取消된 경우
3. 施行者의 不渡·破産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로 지정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提案하는 경우의 都市開發區域의 규모, 提案의 節次, 提出書類, 基礎調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3條第5項 및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 (組合設立의 認可) ①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所有者 7人 이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定款을 작성하여 指定權者에게 組合設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組合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指定權者로부터 變更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設立의 認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面積의 3分の 2 이상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와 그 區域안의 土地所有者 總數의 2分の 1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및 同意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組合員 등) ①組合의 組合員은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所有者로 한다.

②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의 다른 任員 또는 職員을 겸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12.30>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④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2.12.30>

第15條 (조합의 法人格 등) ①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②組合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④조합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0條 (土地面積을 고려한 換地) ①施行者는 土地面積의 규모를 調整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土地에 대하여는 過小土地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換地를 정하거나 換地對象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土地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감소하여 換地를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過小土地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施行者가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程으로 정한다.

第53條 (費用負擔의 원칙) 都市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施行者가 부담한다.

第59條 (都市開發特別會計의 設置 등)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都市開發事業을 촉진하고 都市計劃施設事業의 設置支援 등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都市開發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개정 2002.2.4, 2002.12.30>

1.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政府의 補助金
3.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5.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된 過怠料
6. 首都圈整備計劃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에 귀속되는 過密負擔金중 당해市·道の 條例로 정하는 比率의 金額
7.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는 開發負擔金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比率의 金額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規定에 의한 收益金
9. 地方稅法 第2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되는 都市計劃稅의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金額
10. 차입금
11. 당해 特別會計資金의 融資回收金·利子收入金 및 기타 收益金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第60條 (特別會計의 運用) ①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개정 2002.2.4, 2002.12.30>

1.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대한 工事費의 보조 및 融資
2. 都市計劃施設事業에 관한 보조 및 融資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元利金の 償還
 5.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計劃樹立 및 制度發展을 위한 調査·研究費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特別會計의 造成·運用 및 관리를 위한 經費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②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特別會計의 運用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63條 (他人土地의 出入) ①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調査·測量 또는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障礙物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行政廳이 아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한한다), 出入하고자 하는 날의 3日전에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일시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하거나 障礙物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경우 土地 또는 障礙物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는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障礙物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土地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障礙物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 또는 障礙物등의 所有者·占有者나 管理人에게 土地의 일시 사용 또는 障礙物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日出전 또는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の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⑦ 土地의 占有者는 正當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와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證票와 許可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68條 (收益金 등의 사용제한 등) ①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施行者에게 귀속되는 土地로서 用途가 廢止된 土地를 처분하여 생긴 收益金은 당해 開發計劃으로 정하여진 目的의의 目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② 施行者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替費地의 賣却代金과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清算金의 徵收金, 第55條·第56條 및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과 補助金 등을 당해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이 아닌 다른 目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金 등을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으로 사용한 후 執行殘額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特別會計에 귀속된다. <개정 2002.12.30>

第83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測量을 위한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者
2. 第63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3.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組合이 都市開發事業이 아닌 다른 業務를 한 때
2.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63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 5.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書類 또는 圖面을 引繼하지 아니한 者
- 6.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7.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

□ 都市開發法施行令

제6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다음 각목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유지할 것
 - 나. 변경면적이 당초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일 것
 - 다.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3.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변경에 한한다.
4.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6.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7.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8.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획의 변경
9.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증감
10.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10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

소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광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에 광고할 수 있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20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에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7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0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